

JITENDRA KUMAR & ASSOCIATES

Chartered Accountants · 공인회계사 사무소

2026 년 10 월 8 일

수신 Jitendra Kumar & Associates 고객사 귀중
참조 경영진 및 이사회
발신 Jitendra Kumar & Associates 공인회계사 사무소
제목 제 57 차 GST 위원회(2026 년 10 월 8 일 개최) 결정사항 안내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금일 연방 재무장관 주재로 제 57 차 GST 위원회가 뉴델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ST 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위원회는 등록, 신고, 환급, 매입세액공제(ITC), 집행, 재화의 이동, 용역의 수출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절차 개혁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번 권고 중 일부는 운전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역전세율구조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매입 용역에 대한 누적 ITC의 환급이, 수출자 및 역전세율구조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설비·기계에 대한 ITC의 환급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환급 청구를 더 짧은 기한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과, 체포 권한을 삭제하고 형사소추 금액 기준을 5,000 만 루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 붙임 메모에서는 각 권고사항, 개정이 예상되는 법령 조항, 환급 사례, 개정 내용을 요약한 흐름도 및 현 단계에서 권장되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메모는 공개된 2026 년 10 월 8 일자 제 57 차 회의 결과에 관한 노트와 재무장관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권고로서, 대부분은 CGST 법, IGST 법 및 관련 규칙이 개정되고 그 개정이 고시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가 발표되는 대로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사업, 특히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할 환급 청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영문 메모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영문과 한국어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합니다.

붙임 요약 보고서 및 별첨 A(제 57 차 GST 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에 관한 메모) 1 부. 끝.

Jitendra Kumar & Associates 공인회계사 사무소

파트너 CA 니산트 싱갈(CA Nishant Singhal)

요약 보고서

제 57 차 GST 위원회 — 2026 년 10 월 8 일

쟁점

2026 년 10 월 8 일 개최된 제 57 차 회의에서 GST 위원회가 행한 권고 및 현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조치.

결론 요지

GST 세율 변경 없음. 권고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재무적 영향이 큰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역전세율구조(inverted duty structure)에서 매입 용역에 대한 ITC 의 환급(2026 년 11 월 1 일 이후 계상한 ITC), (b) 설비·기계에 대한 ITC 의 매월 60 분의 1 씩 환급(2027 년 4 월 1 일 이후 계상한 ITC), (c) 접수 후 3 영업일 이내 시스템에 의한 청구액 90%의 승인, (d) 공급자 자신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공급되는 용역 및 외국 고객의 재화에 대한 용역의 수출 취급. 집행 측면에서는 체포 권한의 삭제, 형사소추 대상을 5,000 만 루피 초과 사안으로 한정하는 것, 일반 가산세를 1 만 루피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권고는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납세자는 향후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당 일자부터 기록을 정비하여야 하나, 개정이 고시될 때까지 세무상 처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 권고사항

항목	권고	효과	별첨 A
환급 절차	10 일 이내 접수(기한 내 미발행 시 접수로 간주), 접수 후 3 영업일 이내 시스템이 90% 승인, 전자현금원장 잔액의 자동 환급	환급 시기 단축	4.1-4.3 항
역전세율구조	2026 년 11 월 1 일부터 매입 용역에 대한 ITC 를, 2027 년 4 월 1 일부터 설비·기계에 대한 ITC 를 매월 60 분의 1 씩 환급 대상에 추가	미사용 ITC 해소	4.4-4.5 항
용역의 수출	자사 해외지점을 통하여 공급되는 용역 및 외국 고객의 재화에 대한 용역을 수출로 취급	영세율 및 환급	4.6 항, 9.1 항
매입세액공제	임직원 단체 의료·생명보험, 통신탑, 공장 외부 파이프라인, 무상 샘플 및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재화에 대한 ITC, 특정 용역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세부담 경감	제 5 절
집행	체포 권한 삭제, 5,000 만 루피 초과 시에만 형사소추, 최저형 폐지, 일반 가산세 1 만 루피, 1 만 루피 미만은 통지서 미발행	형사책임 축소	제 7 절
운송 증인 재화	출발 주 또는 도착 주에 한하여, 구체적 정보에 근거하고 Joint Commissioner 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정차·검사	정차·검사 감소	제 8 절
등록 및 신고	통상적인 변경사항 자동 승인, 과거 기간 정정, IMS 를 통한 ITC 확정, 매출액 5,000 만 루피 이하 B2C 납세자의 연간 신고 선택제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제 6 절
추가 심의	제 16 조(2)(c)에 따른 선의의 공급받는 자 보호 및 제 17 조(5)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ITC	변경 없음	제 10 절

주요 일정

일자	사항
2026 년 10 월 8 일	위원회 권고 발표
2026 년 11 월 1 일	동일 이후 계상한 매입 용역에 대한 ITC 를 역전세울구조에서의 환급 대상으로 함(제 54 조(3) 및 규칙 89(5)의 개정이 전제)
3 개월 이내	선의를 공급받는 자 보호에 관한 공무원위원회의 보고, 차기 위원회 회의 안건
2027 년 4 월 1 일	동일 이후 계상한 설비·기계에 대한 ITC 를 매월 60 분의 1 씩 환급 대상으로 함. 절차 개혁도 동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됨
차기 위원회 회의	연간 신고 제도의 체계, 선의의 공급받는 자에 관한 제안, 세율에 관한 연례 회의

본 요약은 별첨 A 메모의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별첨 A 전체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하 여백

별첨 A

제 57 차 GST 위원회 회의 결정사항

환급, 매입세액공제, 집행 및 절차 개혁 — 환급 사례 및 흐름도 포함

회의일

2026 년 10 월 8 일, 뉴델리

현황

위원회 권고 — 법령 개정 및 고시 대기 중

대상

Jitendra Kumar & Associates 고객 여러분

작성: 파트너 CA 니샨트 싱갈

Jitendra Kumar & Associates 공인회계사 사무소 · 뉴델리 · 2026 년 10 월 8 일

본 문서는 영문 메모의 한국어 번역본이며, 영문과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한다.

목차

- 1 배경 및 범위
- 2 결정사항의 지위 및 시행 절차
- 3 결정사항 개요
- 4 환급 — 절차 변경 및 사례
- 5 매입세액공제
- 6 등록, 신고 및 등록 취소
- 7 집행, 형사소추 및 쟁송
- 8 재화의 이동
- 9 용역의 수출 및 전자상거래
- 10 추가 심의 사항
- 11 고객의 조치사항
- 12 범위, 전제 및 한계

흐름도

- | | | |
|---|----------------------------|-------|
| 1 | 위원회 권고가 시행되기까지의 절차 | 제 2 절 |
| 2 | 분야별 권고 개요 | 제 3 절 |
| 3 | 환급 절차 — 현행 및 개정안 | 4.1 항 |
| 4 | 역전세율구조에서의 누적 ITC 환급 | 4.4 항 |
| 5 | 집행 체계(개정안) | 제 7 절 |
| 6 | 운송 중인 재화의 정차·검사 — 현행 및 개정안 | 제 8 절 |

사례

- | | | |
|---|---|-------|
| 1 | 재화 수출자 — 환급 일정 | 4.2 항 |
| 2 | 전자현금원장의 초과 잔액 | 4.3 항 |
| 3 | 역전세율구조 — 매입 용역 및 설비·기계 | 4.5 항 |
| 4 | 해외지점을 통하여 공급되는 용역 | 4.6 항 |
| 5 | 외국 고객의 재화에 대한 시험 용역 | 4.6 항 |
| 6 | 실제하지 않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3,000 만 루피의 ITC | 7.2 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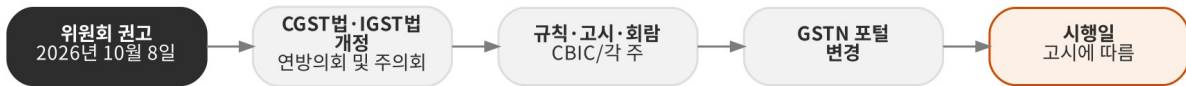
1 배경 및 범위

- 1.1 제 57 차 GST 위원회는 연방 재무장관 주재로 2026 년 10 월 8 일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당초 2026 년 10 월 7 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0 월 8 일로 변경되었다. 각 주 및 연방직할지의 총리 (Chief Minister), 부총리 및 재무장관과 재무부 및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의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 1.2 본 메모는 권고 내용을 요약하고, 개정이 예상되는 2017 년 중앙 재화·용역세법(CGST 법), 2017 년 통합 재화·용역세법(IGST 법) 또는 2017 년 CGST 규칙의 조항을 특정하며, 환급에 관한 변경사항을 사례로 설명하고 권장 조치를 제시한다.
- 1.3 **정보 출처.** 본 메모는 공개된 2026 년 10 월 8 일자 제 57 차 GST 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한 노트(이하 "노트") 및 같은 날 재무장관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에 근거한다. 노트는 언론정보국(PIB) 또는 GST 위원회 사무국의 공표 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회의록, 개정 법령 및 고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 결정사항의 지위 및 시행 절차

- 2.1 헌법 제 279A 조에 따라 GST 위원회는 권고를 행하는 기관이다. 권고는 연방의회 및 주의회가 CGST 법, IGST 법 및 각 주의 SGST 법을 개정하거나,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규칙을 개정하고 고시를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가진다. 체포, 형사소추, 가산세, 공제 제한, 용역 수출의 정의 및 역전세율구조에서의 환급 범위에 관한 변경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2027 년 재정법안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양식 및 기한의 변경은 주로 규칙의 범위에 속하나, 시스템에 의한 승인 및 접수 간주에 대하여는 제 54 조의 개정도 필요할 수 있다.

흐름도 1 위원회 권고가 시행되기까지의 절차



- 2.2 노트는 두 가지 일자를 제시하고 있다. 즉, 2026 년 11 월 1 일 이후 계상한 매입 용역에 대한 ITC 및 2027 년 4 월 1 일 이후 계상한 설비·기계 등에 대한 ITC 가 환급 대상이 된다.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절차 개혁은 202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각 조치의 시행일은 고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2.3 **2026 년 11 월 1 일부터의 매입 용역에 대한 ITC 환급.** "매입 재화(inputs)"로의 한정은 제 54 조(3) 제 1 단서 (ii) 자체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Union of India v. VKC Footsteps India Pvt Ltd*(2021년)에서 규칙 89(5)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가 환급을 재화로 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2026 년 11 월 1 일은 재정법이 제정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보다 앞서므로, 본 권고는 법률의 소급 개정 또는 잠정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동일 이후 해당 ITC 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나,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매입 용역에 대한 환급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장사항. 제안된 환급의 적격성은 ITC 의 계상일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정이 고시되기 전이라도 2026 년 11 월 1 일 이후의 ITC 를 유형별 및 계상월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결정사항 개요

- 3.1 위원회는 작년에 도입된 세율 구조는 확정된 것이며, 세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이를 위하여 별도로 마련되는 연 1 회의 회의에서 다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의 권고는 다음 6 개 분야에 관한 것이다.

흐름도 2 분야별 권고 개요

제57차 GST 위원회 · 2026년 10월 8일 세율 변경 없음 · 6개 분야의 절차 개혁		
등록 통상적 변경사항 자동 승인 신청서 양식 간소화 등록 취소 자동화	신고 과거 기간 정정 허용 IMS를 통한 ITC 확정 연간 신고 선택제 (B2C 한정, 5,000만 루피 이하)	환급 10일 이내 접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시스템이 90% 승인 매입 용역 및 설비·기계 등에 대한 ITC 환급
매입세액공제(ITC) 임직원 단체 의료· 생명보험 통신료, 공장 외부 파이프라인 무상 샘플, 유효기간 경과 폐기품 선의의 공급받는 자 보호; 추가 검토	집행 체포 권한 삭제 형사소추는 5,000만 루피 초과 사안에 한정 일반 가산세 1만 루피 1만 루피 미만은 통지서 미발행	용역의 수출·전자상거래 자사 해외지점 경유 공급을 수출로 취급 외국 고객 재화에 대한 용역을 수출로 취급 소규모 공급자: ECO 창고를 통한 주간(州間) 공급

- 3.2 아래 표는 각 권고에 대하여 개정이 예상되는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조항의 참조는 당 사무소의 이해에 따른 것이며, 실제 고시되는 개정과 다를 수 있다.

권고	개정이 예상되는 조항	현행 처리
10 일 이내 환급 접수(기한 내 미발행 시 접수 간주)	CGST 규칙 90(2) 및 90(3)	접수 또는 보완요구는 15 일 이내, 접수 간주 규정 없음
시스템에 의한 3 영업일 이내 90% 승인	제 54 조(6) 및 규칙 91(2)	접수 후 7 일 이내 담당 공무원이 잠정 환급, 2025 년 10 월부터 위험 평가에 근거
역전세율구조에서의 환급에 매입 용역에 대한 ITC 추가	제 54 조(3) 제 1 단서 (ii), 규칙 89(5) ("Net ITC")	매입 재화에 대한 ITC 만 대상
설비·기계에 대한 ITC 의 환급	규칙 89(4) 및 89(5)	자본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
자사 해외지점을 통하여 공급되는 용역의 수출 취급	IGST 법 제 2 조(6)(v) 및 제 8 조 해설 1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별개의 자의 사업장에 불과한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 고객의 재화에 대한 용역의 수출 취급	IGST 법 제 13 조(3)(a)	공급장소는 인도, GST 과세
임직원 보험, 통신탑, 파이프라인, 무상 샘플 및 유효기간 경과 폐기품에 대한 ITC	제 17 조(5)(b), (c), (d), (h) 및 제 17 조 해설	공제 불가
체포 권한 삭제	CGST 법 제 69 조	특정 범죄에 대하여 체포 가능
형사소추 기준 5,000 만 루피, 최저형 폐지	CGST 법 제 132 조(1) 및 제 132 조(3)	2,000 만 루피(제(b)호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1,000 만 루피), 제 132 조(3)에 따른 최저 6 개월 징역, 징역 및 벌금 병과
일반 가산세 1만 루피	CGST 법 제 125 조	2 만 5,000 루피 이하
1만 루피 미만은 통지서 미발행	CGST 법 제 74A 조(1) 단서	1,000 루피 미만은 통지서 미발행(2024-25 회계연도 이후)
운송 증인 재화의 정차·검사	제 68 조 및 제 129 조, 규칙 138B	모든 주에서 정차·검사 가능
등록 취소의 자동화, 등록 취소 신청에 최종 신고 포함	제 29 조 및 제 45 조	최종 신고(GSTR-10)는 별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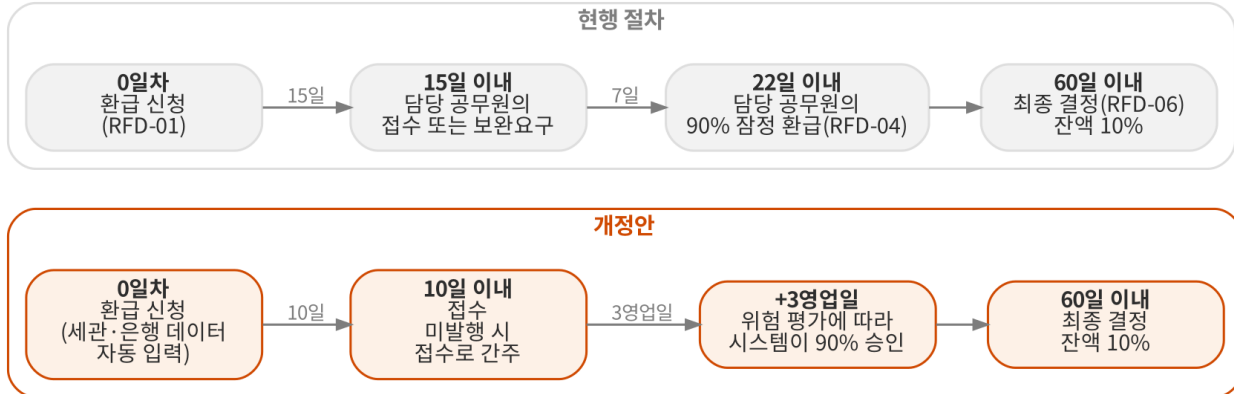
4 환급 — 절차 변경 및 사례

4.1 환급 청구의 접수 및 승인

- 4.1.1 현행 규정상 담당 공무원은 규칙 90(2) 및 90(3)에 따라 15 일 이내에 접수 또는 보완요구를 발행하고, 다시 규칙 91(2)에 따라 7 일 이내에 90%의 잠정 환급을 한다. 2025 년 10 월 3 일자 CBIC 지침 제 06/2025-GST 호에 따라 2025 년 10 월 이후 영세율 공급 및 역전세율구조에 관한 청구의 경우 잠정 환급이 시스템의 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승인되고 있으나, 결정은 여전히 담당 공무원이 발행한다.

4.1.2 접수 기한을 10 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10 일 이내에 접수 또는 보완요구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후 청구액의 90%는 담당 공무원이 아닌 시스템에 의하여 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승인되며, 접수 후 3 영업일 이내에 결정이 발행된다. 선적 정보는 세관 시스템에서, 지급 정보는 은행 시스템에서 취득되어 신청서에 자동 입력된다.

흐름도 3 환급 절차 — 현행 및 개정안



4.1.3 노트에 따르면 환급 청구의 65%는 수출 또는 역전세율구조에 관한 것이며, 그중 55%는 이미 저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는 전자현금원장의 잔액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한 절차는 대부분의 청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으로 판정된 청구는 계속하여 담당 공무원이 심사한다.

4.2 사례 — 재화 수출자

사례 1 LUT 에 따른 재화 수출자 — 미사용 ITC 의 환급

제조업자가 이행서약서(LUT)에 따라 IGST 를 납부하지 않고 재화를 수출하고 있다. 2027 년 4 월 5 일(월)에 2027 년 3 월분 미사용 ITC 500 만 루피의 환급을 청구한다. 해당 청구는 저위험으로 평가된다. 휴일은 고려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은 허용된 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계	현행 절차	제안 절차
환급 신청	2027 년 4 월 5 일	2027 년 4 월 5 일
접수(최종 기한)	2027 년 4 월 20 일	2027 년 4 월 15 일(접수 간주)
90% 환급 승인(최종 기한)	2027 년 4 월 27 일	2027 년 4 월 20 일
이 단계의 환급액	450 만 루피	450 만 루피
최종 결정 시 잔액 10%	50 만 루피	50 만 루피
최종 결정 — 제 54 조(7), 60 일 이내	2027 년 6 월 4 일까지	2027 년 6 월 4 일까지
90% 수령까지의 일수	22 일	15 일

검토 의견. 450 만 루피의 잠정 환급을 7 일 앞당겨 수령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10 일 경과 시 접수가 간주되고 승인이 담당 공무원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기한이 확실해진다는 것이다. 매월 환급을 청구하는 수출자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매월 발생한다. 잔액 10%는 계속하여 최종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4.3 전자현금원장의 초과 잔액

4.3.1 제 49 조(6)에 따른 전자현금원장 초과 잔액의 환급은 담당 공무원의 관여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양식 GST RFD-01 에 의한 신청 및 담당 공무원의 처리가 필요하다.

사례 2 전자현금원장의 초과 잔액

한 유통업자가 2027 년 2 월 양식 GST PMT-06 으로 35 만 루피를 착오로 이중 납부하였다. 납세의무 이행 후 전자현금원장에 35 만 루피의 초과 잔액이 남아 있다.

단계	현행 절차	제안 절차
신청	RFD-01("현금원장 초과 잔액" 구분)	포털상 청구(양식은 추후 고시)
심사	담당 공무원의 접수, 심사 및 결정	없음 — 시스템이 처리
환금액	35 만 루피	35 만 루피
기간	최장 60 일	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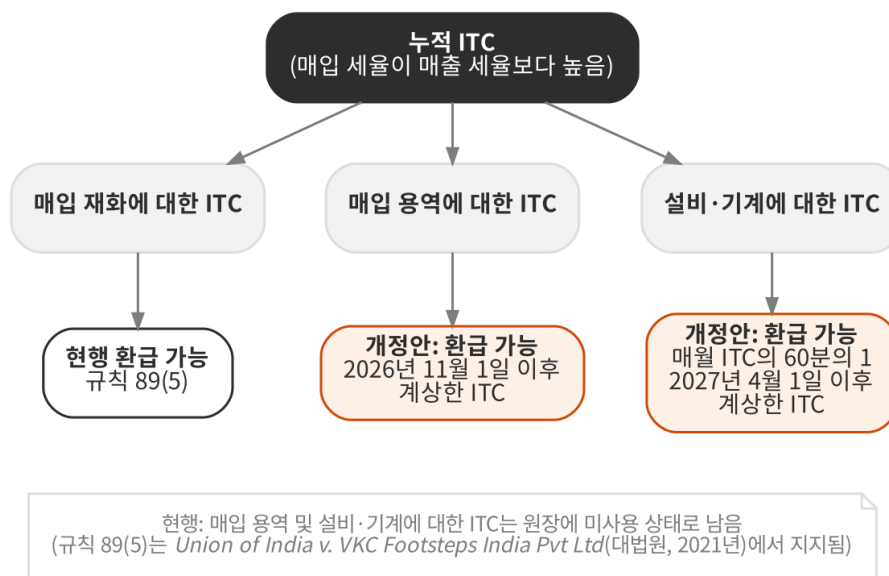
검토 의견. 사전 납부 또는 착오 납부로 인한 초과 잔액은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급된다. 해당 기능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전자현금원장에 잉여 잔액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역전세율구조 — 매입 용역 및 설비·기계

4.4.1 **현행 처리.** 제 54 조(3) 제 1 단서 (ii)는 매입 재화의 세율이 매출 세율보다 높아 누적된 ITC 의 환급을 인정하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고시된 재화(예: Notification No. 5/2017-Central Tax (Rate))는 제외된다. 규칙 89(5)는 "Net ITC"를 매입 재화에 대한 ITC 로 한정하고 있어 매입 용역 및 자본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Union of India v. VKC Footsteps India Pvt Ltd*(2021년)에서 이러한 제한을 지지하고, 그 제한은 법률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판시하였다. 규칙 89(4) 역시 영세율 공급에 관한 환급에서 자본재를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역전세율구조에 있는 납세자의 전자공제원장에는 매입 용역 및 자본재에 대한 ITC 가 미사용 상태로 남는다.

4.4.2 **권고.** 2026 년 11 월 1 일 이후 계상한 매입 용역에 대한 ITC 를 역전세율구조에서의 환급 대상에 포함한다. 설비·기계에 대한 ITC 의 제외는 영세율 공급 및 역전세율구조 모두에 대하여 철폐한다. 2027 년 4 월 1 일 이후 계상한 설비·기계에 대한 ITC 의 환급액은 내용연수 5 년에 대응하여 매월 ITC 의 60 분의 1로 계산한다.

흐름도 4 역전세율구조에서의 누적 ITC 환급



4.5 사례 — 역전세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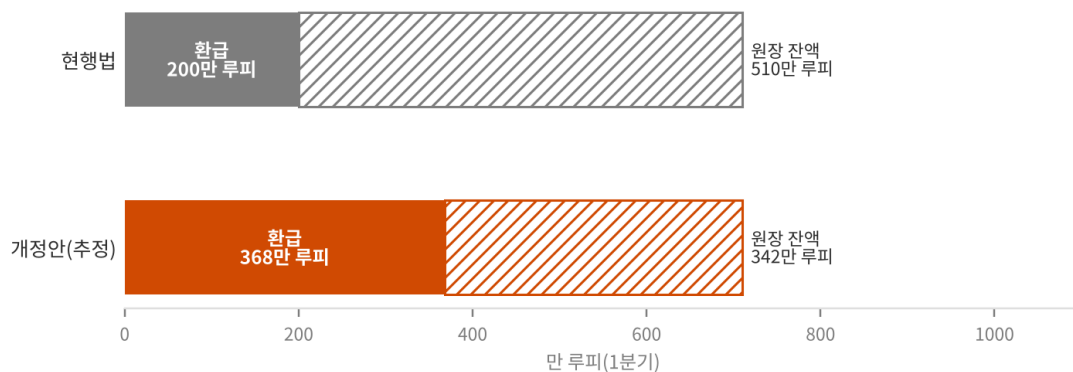
사례 3 매출 5%·매입 18%의 제조업자

한 제조업자는 5%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매입 재화는 18% 과세 대상이다. 모든 공급은 국내 역전세울 공급이며, 그 공급 재화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고시된 재화가 아니다. 수치는 2027 년 4 월~6 월 분기의 것이다. 2027 년 4 월에 2,000 만 루피의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360 만 루피의 ITC 를 계상하였다.

개정 후 규칙 89(5)의 산식은 고시되지 않았다. 본 사례에서는 매입 용역에 대한 ITC 및 설비·기계 등에 대한 ITC 의 월별 60 분의 1 상당액이 현행 산식의 "Net ITC"에 가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대 환급액 = (역전세울 공급의 매출액 × Net ITC ÷ 조정 후 총매출액) - (역전세울 공급에 대한 납부세액 × Net ITC ÷ 대상 ITC)

항목(단위: 만 루피)	현행법	개정안
역전세울 공급의 매출액 = 조정 후 총매출액	10,000.0	10,000.0
매출세액(5%)	500.0	500.0
매입 재화에 대한 ITC(18%)	700.0	700.0
매입 용역에 대한 ITC	150.0(대상 외)	150.0
설비·기계 등에 대한 ITC(360.0 ÷ 60 × 3 개월)	18.0(대상 외)	18.0
산식상 Net ITC	700.0	868.0
(10,000 × Net ITC ÷ 10,000) - (500 × Net ITC ÷ Net ITC)	700.0 - 500.0	868.0 - 500.0
당 분기 환급 가능액	200.0	368.0
분기 말 전자공제원장 잔액	510.0	342.0

검토 의견. 당 분기 환급액은 200 만 루피에서 368 만 루피로 증가한다. 매입 용역에 대한 ITC 150 만 루피는 같은 분기에 환급 대상이 된다. 역전세울구조에서 통상 미사용 상태로 남은 생산라인에 대한 ITC 360 만 루피는 60 개월에 걸쳐 매월 6 만 루피씩 환급 대상이 된다. 어느 경우에도 누적 ITC 는 710 만 루피(ITC 총액 1,210 만 루피에서 매출세액 500 만 루피를 차감)이며, 차이는 환급 대상이 되는 부분뿐이다.



사례 3: 당 분기 환급 가능액 및 원장 잔액(만 루피)

4.5.1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2026 년 11 월 1 일 이전에 계상한 매입 용역에 대한 ITC 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ITC 의 계상월이 중요하다. 둘째, 60 개월 배분은 자본재에 대한 공통 ITC 와 관련하여 규칙 43 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5 년의 내용연수와 일치한다. 해당 기간 내에 설비·기계를 매각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도 제 18 조(6) 및 규칙 44(6)에 따른 납부가 요구되며, 규칙에서 해당 설비·기계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환급의 회수를 정할 가능성도 있다.

4.6 용역의 수출 — 해외지점을 통한 공급 및 외국 고객의 재화에 대한 용역

4.6.1 **해외지점을 통한 공급.** 인도 국내 공급자가 자사 해외지점을 통하여 외국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IGST 법 제 8 조 해설 1에 따라 인도 국내 사업장과 해외지점은 별개의 자의 사업장으로 보므로 같은 법 제 2 조(6)의 요건 (v)를 충족하지 못한다. 해당 공급은 제 7 조(5)(a)에 따른 주간(州間) 공급이 되며,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더라도 IGST 가 과세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완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자회사의 취급. 인도에서 설립된 회사와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은 별개의 자이므로, 인도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 또는 그룹 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이미 용역의 수출로 취급되고 있다(2021년 9 월 20 일자 Circular No. 161/17/2021-GST). 이번 개정안은 자사 해외지점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인도 국내 사업체에만 관련된다.

4.6.2 **외국 고객의 재화에 대한 용역.** IGST 법 제 13 조(3)(a)에 따라 물리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에 관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해당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외국 고객의 재화에 대하여 인도 국내에서 행하는 시험, 수리, 인증, 연구 또는 가공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3)(a)의 단서는 수리 또는 그 밖의 처리·가공을 위하여 일시 수입되고, 인도 국내에서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재수출되는 재화만을 제외하고 있다. 재화의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용역을 용역의 수출로 취급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사례 4 미국 지점을 통하여 공급되는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

구르그람 소재 회사가 미국 고객에게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동사의 미국 지점이 수행한다. 인도 본사는 분기마다 2,000 만 루피를 미국 지점에 청구하고 있다. 분기별 매입 용역에 대한 ITC 는 80 만 루피이며, 매출액은 모두 이러한 유형이다.

항목(단위: 만 루피)	현행법	개정안
인도 본사가 미국 지점에 제공한 용역의 가액	2,000.0	2,000.0
공급의 성격	주간 공급(과세)	수출(영세율)
IGST(18%)	360.0	LUT 에 따라 납부 없음
매입 용역에 대한 ITC	80.0	80.0
현금에 의한 IGST 납부액(360.0 - 80.0)	280.0	없음
ITC 환급 — 규칙 89(4): $2,000 \times 80 \div 2,000$	대상 외	80.0

검토 의견. 분기마다 280 만 루피의 현금 IGST 납부가 불필요해지고 80 만 루피의 ITC 가 환급 대상이 된다. 과거 기간에 이러한 공급을 수출로 처리하여 온 납세자는 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개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과거 기간은 계속하여 과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5 일본 고객의 시제품에 대한 시험 용역

푸네 소재 시험기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시제품을 받아 인도 국내에서 시험 및 인증을 하고 그 결과를 일본에 송부한다. 시제품은 파괴 시험에서 소비되어 재수출되지 않으므로 제 13 조(3)(a)의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는 400 만 루피, 사용한 소모품 및 용역에 대한 ITC 는 30 만 루피이다.

항목(단위: 만 루피)	현행법	개정안
공급장소 — IGST 법 제 13 조(3)(a)	인도	수출로 취급
CGST 9% + SGST 9%(외국 고객 부담)	72.0	LUT 에 따라 과세 없음
시험기관의 ITC	30.0(매출세액에 총당)	30.0(환급 대상)
고객 지급액(세금 포함)	472.0	400.0

검토 의견. 외국 고객의 18% 세부담이 해소되어, 인도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용역은 다른 국가·지역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동등한 조건이 된다. 이는 시험 및 가공을 위하여 인도 자회사 또는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 일본계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 그룹에 중요하다.

4.6.3 위원회는 또한 수출대금의 수령 시기를 인도준비은행의 지침에 맞추어 외환관리법(FEMA)과 GST 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

5 매입세액공제

5.1 특정 사업 지출에 대한 ITC

5.1.1 현재 제 17 조(5)에 따라 공제가 제한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도록 권고되었다. 개정은 장래에 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시될 때까지 ITC 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 생명보험 및 의료보험은 2025 년 9 월 22 일부터 면세되고 있으므로, 보험에 관한 조치는 계속하여 18%로 과세되는 고용주 가입 단체보험에 주로 관련된다.

항목	현행 제한	영향을 받는 업종
임직원 단체 의료보험·생명보험	제 17 조(5)(b)(법령상 의무인 경우 제외)	모든 고용주
통신탑	"설비·기계"에서 제외, 제 17 조(5)(c)/(d)	통신·통신탑 사업자
공장 외부에 부설된 파이프라인	"설비·기계"에서 제외, 제 17 조(5)(c)/(d)	석유·가스, 수도, 화학
무상 샘플	제 17 조(5)(h)	의약품, 일용소비재, 소비재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가 요구되는 재고의 폐기	제 17 조(5)(h)	의약품, 식품, 일용소비재

제 17 조(5)(d)는 대법원의 Chief Commissioner of CGST v. Safari Retreats Pvt Ltd(2024 년) 판결 이후 2025 년 재정법에 따라 2017 년 7 월 1 일로 소급하여 "plant and machinery"로 개정되었다. 통신탑 및 파이프라인은 이번에 제안된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설비·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5.2 특정 용역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5.2.1 1박 7,500 루피 이하의 호텔 숙박, 음식·케이터링 용역 및 일부 여객운송 용역은 ITC 없이 5%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용역을 조달하여 동일한 사업 분야에서 재공급하는 납세자는 지급한 세액에 대한 ITC 를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용역에 이중으로 과세된다. 이러한 경우 ITC 를 허용하여 과세가 한 번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권고되었다.

5.3 선의의 공급받는 자 보호

5.3.1 유효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재화를 수령하였으며, 공급자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한 공급받는 자를 공급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제 16 조(2)(c))에 보호하는 제안은 승인되지 않았다. 공무원위원회(Committee of Officers)가 3 개월 이내에 검토하여 차기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은 장관그룹(GoM)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현행 처리가 유지되므로, 공급받는 자는 계속하여 공급자의 납세협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등록, 신고 및 등록 취소

- **등록.** 현재 등록의 61%는 시스템에 의하여 3 영업일 이내에 부여되고 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표시된다. 상호, 이사 또는 파트너, 추가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과 같은 통상적인 변경사항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이러한 변경은 2025 년 11 월부터 2026 년 9 월까지의 변경 신청 167.3 만 건 중 65%를 차지하였다.
- **신고.** 이미 보고한 가액을 감액하는 공급자는 매출 명세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에 대응하는 변경이 공급받는 자의 기록에 반영된다. 공급받는 자의 GSTIN 오류를 포함하여 과거 기간의 정정이 허용된다. ITC 는 송장관리시스템(IMS)을 통하여 확정되며, 공급받는 자가 승인한 세금계산서만 그 신고에 반영된다. 노트에 따르면 신고 간 차이에 관한 통지서는 연간 약 95,000 건 발행되고 있으나, 회수액은 대상 금액의 약 0.08%에 불과하다.
- **소규모 B2C 납세자의 연간 신고.** 매출액 5,000 만 루피 이하로서 소비자에게만 공급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 1 회 신고와 분기별 납부를 인정하는 선택적 제도가 원칙적으로 승인되었다. 제도의 체계 및 필요한 개정은 차기 회의에 제출된다.
-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소규모 납세자부터 단계적으로 자동화된다. 최종 신고는 등록 취소 신청의 일부가 된다. 신고 미제출 또는 은행 계좌 정보 미비로 시스템이 정지하거나 취소한 등록은 해당 미비 사항이 시정되는 즉시 회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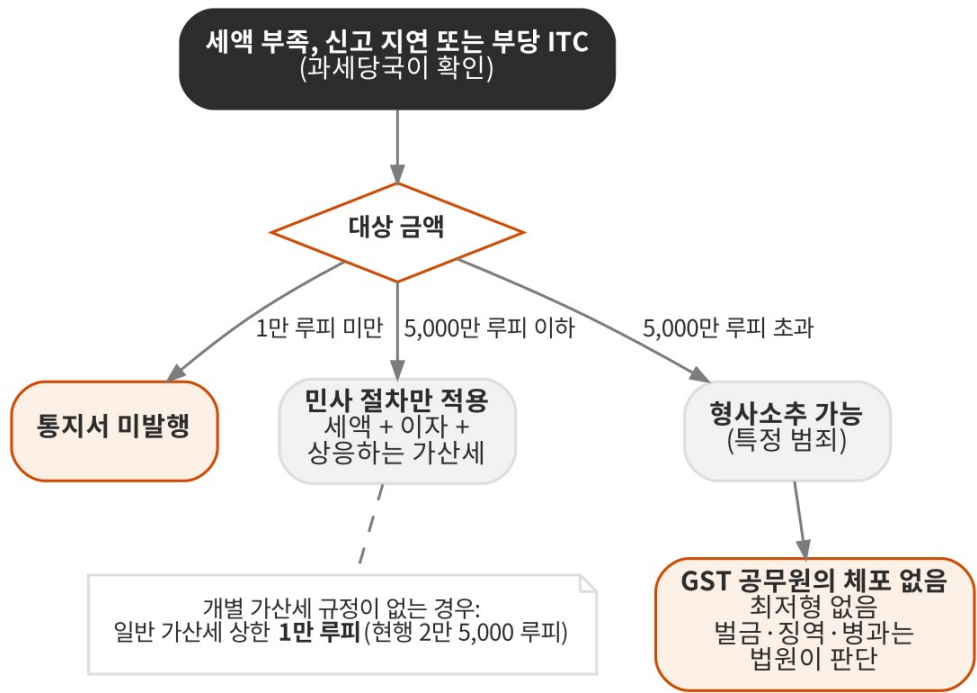
7 집행, 형사소추 및 쟁송

7.1 권고 내용

- **체포.** CGST 법 제 69 조에 따른 체포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 **형사소추.** 제 132 조(1)에 따른 형사소추의 금액 기준을 5,000 만 루피로 상향한다. 현행 기준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2,000 만 루피, 제(b)호에 따른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1,000 만 루피이다(제 48 차 위원회 권고에 따른 2023 년 재정법). 노트는 1,000 만 루피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개정 후 기준이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정 법령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132 조(3)에 따른 6 개월의 최저형은 폐지되며, 벌금, 징역 또는 병과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 **일반 가산세.** 개별 가산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 125 조의 가산세는 2 만 5,000 루피에서 1 만 루피로 인하된다.
- **통지서.** 금액이 1 만 루피 미만인 경우에는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는다(현행은 제 74A 조(1) 단서에 따라 1,000 루피). 통지서의 발행 및 송달, 사전 통지, 부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청문 및 결정문 작성에 대하여는 통일된 기준이 적용된다.

노트에 따르면 신고 지연, 오류 및 납부 지연의 경우에는 세액의 회수, 이자 및 상응하는 가산세만 부과된다.

흐름도 5 집행 체계(개정안)



7.2 사례 — 실재하지 않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ITC

사례 6 실재하지 않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3,000 만 루피의 ITC

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한 회사가 후에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3,000 만 루피의 ITC 를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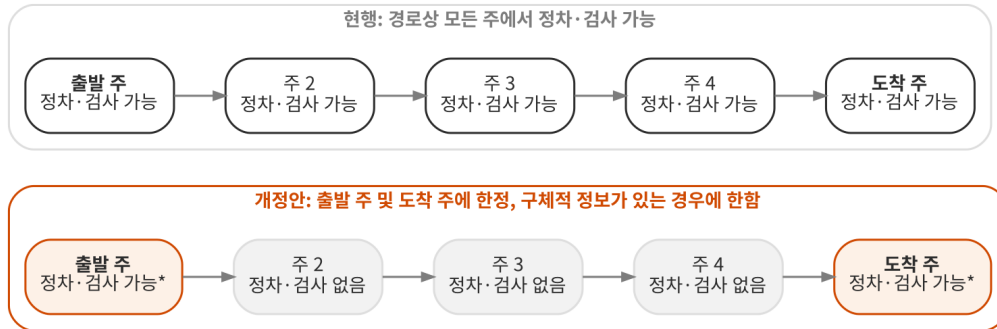
결과	현행법	개정안
세액 및 이자의 회수	있음	있음
제 74 조/제 74A 조(2024-25 회계연도 이후)에 따른 가산세	있음	있음
GST 공무원의 체포 — 제 69 조(제 132 조(4)에 따라 비인지 범죄(영장 없는 체포 불가)이며 보석 가능)	가능	불가
제 132 조(1)(c)에 따른 형사소추	가능(2,000 만 루피 초과)	불가(5,000 만 루피 이하)
절차의 성격	민사 및 형사	민사만

검토 의견. 세액, 이자 및 가산세는 계속하여 회수된다. 변경점은 금액이 5,000 만 루피 이하인 경우의 형사책임 배제에 한정된다. 금액이 5,000 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GST 공무원에 의한 체포 및 최저형은 없다. 진행 중인 절차의 처리는 경과규정에 따른다.

8 재화의 이동

- 8.1 운송수단의 정지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결정에는 Joint Commissioner 이상 직급의 공무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운송수단 내 재화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출발 주 및 도착 주뿐이며, 재화가 통과하는 주는 운송수단을 정차시킬 수 없게 된다. 전자운송장(e-way bill)은 계속하여 필요하며, 시스템에 의한 대조도 계속된다. 적법하게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129 조에 따른 억류 및 가산세가 계속하여 적용된다.

흐름도 6 운송 중인 재화의 정차·검사 — 현행 및 개정안



*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Joint Commissioner 이상 직급의 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9 용역의 수출 및 전자상거래

- 9.1 용역의 수출에 관한 변경사항은 4.6 항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다. 주로 분석·설계 용역 제공자, 엔지니어링 컨설팅사, 다국적 기업 그룹의 캡티브 센터, 수탁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와 관련된다.
- 9.2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규모 공급자.** 소규모 공급자는 전자상거래 운영자(ECO)의 동의를 얻어 다른 주에 소재한 해당 운영자의 창고를 그 주에서의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동의는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부여된다. 공급자는 최소 한 개 주(본거지 주)에 물리적 거점을 보유하여야 한다. 등록은 주별로 PAN 1 개당 1 건이며, 플랫폼을 통한 공급에 한정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이전되는 ITC 가 월 25 만 루피를 초과하는 공급자는 일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9.3 **플랫폼 간 통일적 처리.** 사업 모델이 서로 다른 전자상거래 운영자들이 동일한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여 왔다. 예약에 대한 세액은 실제로 공급되는 용역에 따라 결정하고, 예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급에는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10 추가 심의 사항

사항	현황
선익의 공급받는 자 보호 — 제 16 조(2)(c)	승인되지 않음. 공무원위원회가 3 개월 이내에 보고. 장관그룹에 회부된다고 보도됨
자동차에 대한 ITC — 제 17 조(5)	추가 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됨
소규모 B2C 납세자의 연간 신고 제도	원칙적 승인. 체계 및 개정은 차기 회의에서 심의
GST 세율	변경 없음. 연 1 회의 전용 회의에서 검토
시행일	추후 고시. 환급 관련 변경에 대하여는 2026 년 11 월 1 일 및 2027 년 4 월 1 일로 명시

11 고객의 조치사항

대상	조치사항	시기
역전세율구조에 있는 납세자	매입 용역에 대한 ITC 를 장부 및 GSTR-3B 작업 자료에서 계상월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제 54 조(3)가 개정될 때까지 매입 용역에 대한 환급 청구는 하지 않는다	2026 년 11 월 1 일부터
수출자 및 역전세율구조에 있는 납세자	설비·기계의 각 항목에 대하여 ITC 및 계상월을 표시하는 자본재 대장을 정비한다	2027 년 4 월 1 일부터
재화 수출자	청구가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입력되고 위험 평가되므로 선적 서류, 수출 세금계산서 및 외화 회수 데이터를 대조한다	즉시
해외지점을 통하여 또는 외국 고객의 재화에 대하여 용역을 수출하는 자	계약 및 청구 체계, LUT 및 가격 책정을 재검토하고 과거 기간의 위험을 검토한다	개정 전
모든 고용주	개정이 고시될 때까지 임직원 보험에 대한 ITC 를 계상하지 않는다	고시 후
모든 납세자	IMS 에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승인 또는 거부하고, 전자현금원장에 잉여 잔액을 두지 않는다	상시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납세자	경과규정이 확인되는 대로 진행 중인 조사, 소명요구서 및 형사소추 절차를 새로운 기준에 비추어 재검토한다	고시 후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납세협력 여부 확인을 계속한다. 제 16 조(2)(c)는 변경되지 않았다	상시

12 범위, 전제 및 한계

- 12.1 본 메모는 당 사무소의 고객을 위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다. 특정 사업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이 아니며, 개별 자문 없이 본 메모에 근거하여 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2 본 메모는 공개된 2026 년 10 월 8 일자 제 57 차 GST 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한 노트 및 2026 년 10 월 8 일 현재 입수 가능한 재무장관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에 근거한다. 같은 날 현재 회의록, 개정 법령, 규칙 및 고시는 발표되지 않았다. 보도에 근거한 부분은 그 취지를 기재하였다.
- 12.3 3.2 항의 조항 참조 및 사례 3 에서 사용한 산식은 권고의 시행 방법에 관한 당 사무소의 이해에 근거한 것이다. 최종 개정은 문언, 범위,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서 다를 수 있다.
- 12.4 사례는 권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 수치를 사용하였다. 휴일, 제 56 조에 따른 이자 및 최종 규칙상 제한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 12.5 금액은 인도의 단위(1 라크 = 10 만 루피, 1 크로르 = 1,000 만 루피)를 만 루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 12.6 본 문서는 영문 메모의 한국어 번역본이다. 영문과 한국어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한다.
- 12.7 당 사무소는 본 메모를 갱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고시가 발표되는 시점에 개정판을 발행할 예정이다.

— 별첨 A 끝 —

이하 여백